

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견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(2002. 1. 4 대통령령 제17484호)으로 국내여비 중 숙박비가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단가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국내여비 중 숙박료의 지급단가 중 의장·부의장 란을 현재의 1야당 41,000원에서 5,000원을 인상하여 46,000원으로 의원 란을 현재의 1야당 22,000원에서 3,000원을 인상하여 25,000원으로 조정함. (별표1)

□ 검토의견

- 국내여비 지급단가표(별표)

○ 숙박료

(단위 : 원)

구분	현행	개정
의장·부의장	41,000	46,000
의원	22,000	25,000

-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(2002. 2. 14 대통령령 제17484호)으로 국내여비중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의장·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

별표1중 숙박료(1야당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2]

구분	숙박비 (1야당)
의장·부의장	46,000
의원	46,000

◇ 지방자치법 시행령 [별표7]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

지급기준액		숙박비 (1야당)
구분		
시·도	의장·부의장	41,000
	의원	41,000
시·군·자치구	의장·부의장	41,000
	의원	22,000

비고

-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